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 및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기본입장

모든 기계설비공사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되어야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승일)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 등과 관련하여 기본입장을 밝히고, 전국 회원사에게 일반건설업계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하여 동제도 폐지 등의 의견을 조회할 경우 대한설비건설협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 및 의무하도급제도 폐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는 도입 목적이 일반건설업자는 원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설비 등 전문건설업자는 당해 공종을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수주·시공하는 현행 건설생산체계의 질서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의무하도급제도는 일반건설업자의 위장직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부분(20억원 이상 공사는 원도급 수주금액의 20%, 30억원 이상 공사는 원도급 수주금액의 30%)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의무하도급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가하도급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직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전제로 현재 진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동 제도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는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독일, 일본 등의 선진 외국과 같이 모든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를 허용한다는 사항이 대한 설비건설협회의 기본입장이다.

이러한 기본방침을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유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종에 대하여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허용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이러한 건의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문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아래와 같이 기본입장을 밝히고, 전국 회원사에게 일반건설업계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하여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 등의 의견을 조회할 경우 대한설비건설협회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겹업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 기본입장

1.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겹업제한제도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건설업자의 겹업제한)에 일반·전문건설업자의 겹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5조(건설업자의 겹업범위)에 의하여 아래 7개의 전문건설업종에 대하여는 일반·전문간의 겹업을 허용하고 있다.

※ 주기

1. 일반·전문간의 겹업이 허용된 전문업종은 타법 또는 특수 면허에서 전문건설업으로 1996년에 전환된 업종이며, 기존의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당해 면허를 취득한 업종이어서, 일반과 전문건설업자간의 겹업을 허용하였음.
2. 가스시설시공업은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시공관련기준 등이 제한되어 있어, 일반·전문간의 겹업이 허용되어도 가스시설시공업 전문건설업자의 업역 편해가 경미한 업종임

2.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겹업제한제도의 도입배경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건설업자는 2 이상의 전문건설공사 수주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원칙적으로 공종별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면허 및 발주제도)는 모든 전문공정을 복합적으로 발주하고, 일반건설업자만이 수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비 등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수주 시공토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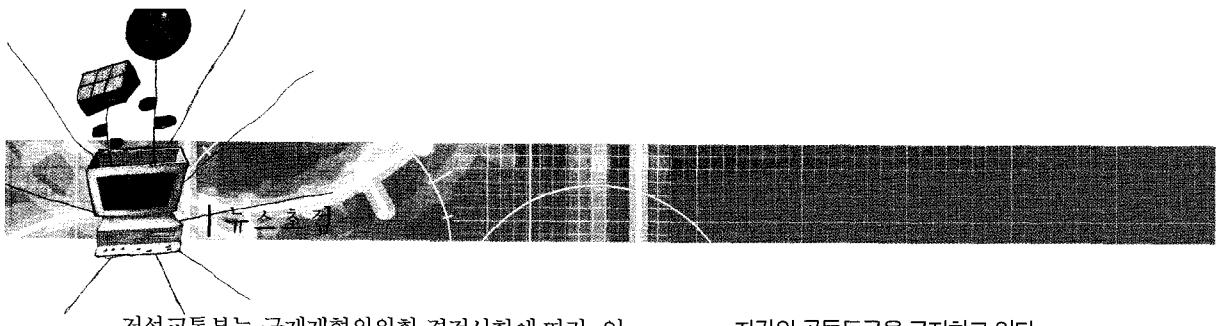
※ 주기

현재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단서 3호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항으로 의무적 또는 전면적 분리발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건설생산체계에서 전문건설업자는 보호하고, 시공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업업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3. 정부의 겹업제한제도 폐지에 대한 기본방향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반·전문간의 겹업제한제도가 규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2000년까지 폐지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였으나 대한설비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의 강한 반발과 대응으로 인하여 수차례 폐지시기가 연기되고 있다.

현행 겹업허용 업종명	허용사유	관련단체
철강재설치공사업	특수건설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	전문협회
준설공사업	상동	상동
식도설치공사업	상동	상동
시설물유지관리업	타법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	상동
승강기설치공사업	신설	상동
난방시공업	타법에서 전문업종으로 전환	열관리협회
가스시설시공업	상동	설비건설협회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대한건설협회 추진내용

대한건설협회는 △철도·궤도공사업 △상·하수도 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등 7개 전문업종에 대하여 일반·전문간의 겸업을 허용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전의하였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산하기관 및 일반건설업체 등을 동원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5.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기본입장 및 당부사항

가.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의 폐지 시기는?

- ① 일부기관에서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 제한제도의 폐지시기를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나,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 ② 겸업제한제도의 폐지시기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을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③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기본취지는 설비공사의 전면적인 분리발주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허용, CM제도의 활성화이다.

* 주기

1. 기계설비공사의 전면적 분리발주 : 설비공사를 전기공사와 같이 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분리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공사는 일반 및 전기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가 없다.
2.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허용
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법에는 전문건설업

자간의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 ②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의미는 건축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자만이 원도급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공사 이외의 다수의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원도급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CM제도의 활성화란 CM업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를 설비공사 등 전문공중별로 분리발주하고, CM업자는 전체적인 공정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의 폐지 시 설비업계의 영향은?

1)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건설생산체계로 개편되면서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가 폐지된 경우

- ① 대부분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되므로, 설비업계는 공사수주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원도급공사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행정능력과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② 또한 전기공사와 같이 민간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의한 공사도 있으므로, 수주전략을 원도급을 우선으로 하되 회사의 기능인력의 여유도 등을 감안 하도급공사도 참여하여야 한다.

2)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건설생산체계 내에서 개편되지 않고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가 폐지될 경우

- ① 일부 대형 건설업체 등은 시공부분에 대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 아웃소싱을 하게 될 가능성 있으며, 중·소형건설회사도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직영공사의 추진이 예상된다.
- ②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칭 “설비건설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